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9-5
(공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2026. 6. 19.

관 계 부 처 합 동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요약)

I 수립배경 및 시사점

- **(수립배경)**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에 완비*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여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해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 필요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00년),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신보 설립('03, 세종 '21)
- **(운용성과)**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함께, 국가적 위기 발생시 소상공인 생업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 '25년말 기준 130만 소상공인이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전체 소상공인의 약 17%)
- **(시사점)**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지원 사각지대 보완 및 지역특화·성장 기반 정책을 강화 필요
 - *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보증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보증과 재보증 제도간 불균형 심화

II 추진방향

비전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핵심 성과목표
◆ 대위변제율: ('25말) 5.07% → ('26말) 4.1% → ('27말) 3.9% → (~'30말) 3.2%
◆ 부실채권 정리: ('26~'30) 총 13만개 업체, 2.2조원 부실채권 정리
◆ 비수도권 공급: ('25) 65.4% → ('26) 66% → ('27) 67% → (~'30) 70%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제도 책임성 제고 위한 기반 마련 ■ 보증심사체계 고도화 및 보증사업평가 개편 ■ 구상권 행사 실효성 제고 및 도덕적해이 방지 ■ 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정화 조치
2 취약 소상공인 대상 포용적 금융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 과감한 정리 ■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진입제한 규제 개선 ■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체계 고도화 ■ 재해피해 및 취약소상공인 지원 강화
3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 및 성장촉진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상권기반 소상공인의 공동성장 지원 보증 강화 ■ 성장촉진 관련 규제 개선 및 기존 지원시스템 고도화

Ⅲ 정책과제

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심사체계 고도화 등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재보증 안정화 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

○ **(보증 책임성 강화)** 전액보증(보증비율 100%) 원칙적 금지 및 보증비율은 축소 (평균 現 94.3% → '27말 90%)하고,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 (현행) 지역신보에서 재보증 없이는 자체 보증공급을 못하도록 제한 → (개선) 금융회사 출연금 등 별도 자원 확보시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토록 개선('26.12)

○ **(심사 및 평가체계 개편)** 평가정보 다변화, 미래성장성 평가를 위한 SCB* 등급 접목 등 보증심사체계 개선 및 보증공급의 질적** 평가 강화

*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시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금융위)

** '보증수혜기업 생존율', '중저신용자 지원 노력도' 등의 평가항목 신설

○ **(도덕적해이 방지)** 상환완료 대출의 보증해지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상임감사 설치, 합리적 상환기간 설정 등 내부통제 강화

* 보증해지 통지기간 명확화, 보증해지 점검체계 마련 등

< 보증해지 관리절차 개선(안) >

	현행	개선
보증해지 통지기간	지역신보법에서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통보토록 규정 → '지체 없이'에 대한 하위규정이 미비	금융회사-지역신보간 약관을 개정하여 '지체없이'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예: 7일내)
보증해지 점검체계	지역신보의 보증해지 처리에 대한 점검체계 미비	신보중앙회에서 지역신보의 보증해지 처리 지연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고 지연시 패널티 부여

○ **(재보증 건전성 제고)** 재보증비율 하향 등 재보증 재원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재보증제도 전면개편 추진

*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재보증비율(예: 50~60%)을 유지하여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 위축 방지

< 재보증제도 개편(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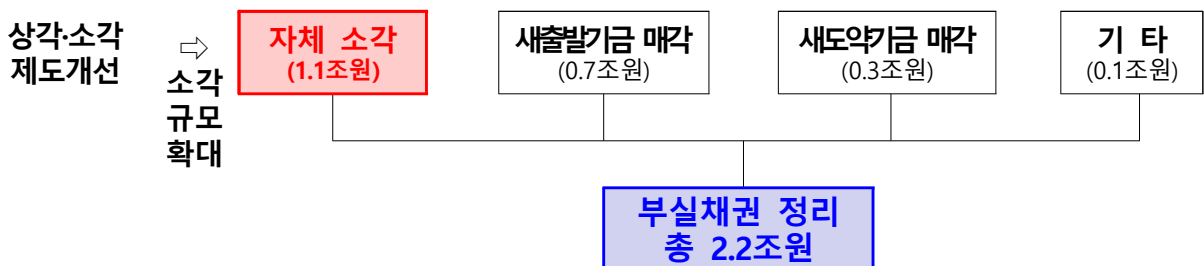
	현 행	개 선
재보증비율	17개 지역신보에서 공급하는 신규 보증에 통상 50% 재보증 적용 (보증잔액 기준 평균 52.2%)	향후 신규공급 보증에 대해 재보증 비율 30% 적용 (단, 중저신용자 보증은 높은 수준 (예: 50~60%) 유지)
재보증한도	17개 지역신보에서 보증계획 수립변경시 적정성 검토없이 재보증 한도 배정	보증계획의 적절성, 한도확대 필요성 등 종합 검토 후 재보증한도 결정
재보증요율	보증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만 지역신보별 차등화 (0.8~1.0%)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세부보증별 보증 자원, 재보증 리스크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화
재보증검사	신보증양회가 재보증 수반 보증을 점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 (재보증계약에 근거해 제한적 운영)	신보증양회가 재보증 수반 보증공급에 대해 검사 및 시정요구 등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법정출연금 배분기준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상황 등을 고려한 객관적 배분기준 마련

2. 취약 소상공인 대상 포용적 금융안전망 확충

◇ 회수불능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로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마련 및 위기·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 강화

- (부실채권 정리) 소각대상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해 지역신보 소각 확대(당초 0.8 → 1.1조원, 0.3조원 ↑) ⇒ 5년간 2.2조원* 부실채권 정리



- **(채무 미변제자 등 규제 개선)**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 등에 대한 신규보증을 허용하고, 파산면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 주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면책 받은 경우 연대보증자 채무도 면제 추진

< 공공정보등록 해제시 소각기업 및 파산면책자 등 지원방안 >

대 상	현 행	개 선
소각기업 (지역신보에서 채권을 포기한 채무 미변제자)	신규보증 제한 (단, 재도전특례보증 허용)	신규보증 허용
파산면책자 등 (아직 채권이 소각되지 않은 채무 미변제자)	신규보증 제한 (단, 재도전특례보증 허용)	소각절차 간소화 통해 신속한 소각지원 (소각후 신규보증 허용)

- **(위기 소상공인 경영지원)** 조기에 위기 징후를 포착하여 상담·경영진단 등을 통해 지원정책 연계 및 지역신보·금융회사 공동 컨설팅 운영 추진
 - **(재해·취약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간접 재해피해 특례보증 신설*,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설(1,700억원) 등 추진
- * 기존에는 직접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만을 지원

3.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 및 성장촉진 위한 제도개선

◇ 지방정부와 협업에 기반한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지역·상권기반 보증을 활성화하고, 성장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 **(지역특화보증 신설)** ‘지역특화보증 공모제’를 도입하여 ‘30년까지 2조원 규모 공급 및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 확대’
 - *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발굴한 우수 보증 기획을 공모 → 일반보증 대비 재보증 조건 등 우대 지원
- **(상권기반 보증 활성화)**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신설 추진 및 2,0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공급
 - * 상권활성화구역 대상으로 상권 기획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상권 활성화 위한 구성원 공동을 지원하는 보증 도입 검토
- **(성장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한도 규제(8억원) 완화하고, IP 보증 신설 등 성장 보증 지원체계 고도화

순 서

I. 추진배경 및 운영 성과	1
II. 개선 필요사항	5
III.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7
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	8
2. 취약 소상공인 대상 포용적 금융안전망 확충 ...	12
3.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 및 성장촉진 제도개선 ·	16
IV. 향후 추진일정(안)	19

I. 추진배경 및 운영 성과

1.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용경과 및 대책 수립배경

- ('00년) '97년 IMF 사태로 자금경색 등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 * 지역별 소상공인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설립근거, 지역 신용보증제도 운영·관리 등을 규정한 법률

- ('03년) 모든 광역시·도(당시 16개)에 지역신보가 설립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완비
 - * 지역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지원
 - ** 전국 지역신보를 대표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 설립('00년) 되었으며, 세종신용보증재단은 2021년 설립

- ('04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신보 보증을 지원하는 재보증* 제도 도입
 - *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채무 보증시, 일정 부분(약 50%)을 신보중앙회가 다시 보증

- (~'22년) 글로벌 금융위기('09), 코로나 팬데믹('19)을 거치며, 보증 잔액이 43조원대로 확대되는 등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수행
 - * 지역신보 보증잔액(조원) : ('07) 4.6 → ('09) 11.2 → ('11) 12.9 → ('13) 13.4 → ... ('17) 18.4 → ('19) 22.2 → ('21) 42.5 → ('23) 44.3 → ('25) 43.6

- (~'25년) 코로나19때 생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등 포용금융에 앞장
 -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도는 골목상권" (국정과제 61번)

◇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에 완비된지 20여년이 경과
→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

(참고1: 지역신용보증제도 및 재보증제도 개요)

- (지역신용보증제도)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

* 만약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못갚을 경우,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

< 지역신보 보증잔액 및 건수 (건,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	건 수	1,018,288	1,629,815	1,846,655	2,203,111	2,137,103	2,012,930	1,952,947
	금 액	221,874	387,269	425,245	461,552	442,667	424,224	435,849

- (재보증제도)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재보증비율, 평균 52.2%)을 신보중앙회가 다시 보증하는 제도

*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신보중앙회가 재보증비율만큼 손실보전금을 지역신보에 지급

< 신보중앙회 재보증잔액 및 건수 (건,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보증잔액	건 수	1,022,478	1,632,092	1,850,639	2,210,583	2,162,091	2,050,353	1,974,553
	금 액	113,684	211,802	228,560	248,649	238,068	225,629	227,628

- (제도 운용원리)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과 금융기관이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각각 보증료와 출연금 납부

* (참고) 금융기관(은행)은 보증 덕분에 신용위험을 분산(리스크 헤지)하는 혜택을 봄

- (보 증 료)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해 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저 0.5%,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징수하는 수수료
- (법정출연금) 금융회사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로 얻는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년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보에 부담금으로 출연



(참고2: 그 간의 논의 경과)

- (4.23) 신보중앙회 주관 17개 지역신보이사장협의회 개최
 - 별도 재원에 기반한 보증(예: 금융회사 임의출연금 등)에 대한 재보증비율 축소 등 재보증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논의

- (5.7) 중기부 주관 17개 지방정부 간담회 개최
 - 지역신용보증제도 및 재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

- (5.20) 중기부 주최 지역신용보증제도 관련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 * KDI, 조세재정연, 한국리스크관리, 한국금융학회 등 산학연 전문가
 - 지역신용보증제도 및 재보증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5.28) 신보중앙회 주관 17개 지역신보 본부장 간담회
 - 재보증비율 축소 등 주요 쟁점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
 - * 별도 재원에 기반한 보증(예: 금융회사 임의출연금 기반 보증 등)에 대한 재보증 제한, 재보증제도 안정화를 위한 재보증비율 축소, 전액보증 금지 등

- (6.1~6.2) 신보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 간 TF구성 및 양일간 회의
 - 재보증제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 및 논의

- (6.8) 지역신보의 자구노력 계획에 대해 논의(중기부-지역신보이사장 면담)
 - * (자구노력 계획) 전액보증 축소 등 부분보증 활성화 방안, 신보중앙회에 대한 법정출연금 배분비율 상향 방안(40% → 50%) 등

2.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용 성과

◇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함께, 국가적 위기 발생시 소상공인 생업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1]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 구현에 충실

-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130만*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하는 등 대한민국 소상공인 약 17%가 제도 이용

* 지역신보 보증잔액(43.6조원) 기준, '25년말 130만 소상공인이 제도 이용 중

- 보증에 기반한 대출(보증부대출)로,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대비 1.5%p 낮은 금리 부담 → 年평균 6,818억원 이자비용 절감

< 최근 5년간 지역신보 금리 감면 효과(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금리절감액	4,866	6,591	7,555	7,751	7,327	6,818
금리절감률	1.6%p	1.5%p	1.5%p	1.5%p	1.4%p	1.5%p

2] 긴급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기여

- 국가적 위기 발생시 소상공인의 금융 버팀목 역할 → 소상공인 생존율이 증가하는 등 안정적 생업 유지에 기여

주요사례

- ① 코로나19 기간('20~'23) 총 56.9조원 신규 보증공급 및 기존 보증 47.2조원 만기연장·상환유예로 보증수혜기업 50% 증가, 보증 잔액 2배 확대
- ② 신규 보증수혜기업 대상 코로나19 이후 생존률 등 분석 결과('24년말 기준) '20~'23년 약 12만명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으로 추가 생존한 것으로 분석

3] 보증 수혜 소상공인의 성장 견인 및 비수도권 중심 보증 공급

- 보증 수혜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성장을 견인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보증공급 ('25년말 기준, 65.4%)

< 비보증기업 대비 지역신보 보증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 증가(%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매출액 증가	13.4	26.9	13.5	13.1	6.1	14.6
고용 증가	2.7	2.5	2.9	2.7	0.9	2.3

* 예시) '20년 기준으로 전후 3년간의 차이를 보증기업과 비보증기업 간 비교

II. 개선 필요사항

1]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필요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책적 특례 조치* 및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실이 확대 → 제도의 안정성 저하

* (예) 전액보증(보증비율 100%) 공급 확대, 만기연장 조치, 심사 간소화 등

- 대표적 안정성 지표인 대위변제율이 '24년 최고점 기록 후 개선되고 있으나, 현재 기준 4.59%로 여전히 높은 상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4월
보증잔액(억원)	425,239	461,547	442,658	424,224	435,849	449,550
재보증잔액(억원)	228,560	248,649	238,068	225,629	227,628	233,956
대위변제율(%)	1.01	1.10	3.87	5.66	5.07	4.59

- 특히, 위기상황 극복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 부실의 일부를 보전해온 재보증제도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된 반면,

* 재보증을 통한 손실보전금이 1.2조원까지 급증('21년 대비 '25년 430% 증가)

- 재보증의 완충 효과 등으로 인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재정 상황은 지속 개선되는 등 제도간 건전성의 불균형 심화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지역신용보증 (지역신보)	기본재산(억원)	46,580	52,952	55,372	55,858	59,310	63,745
	운용배수(배)	(9.13)	(8.72)	(7.99)	(7.59)	(7.35)	(6.96)
재보증 (신보증양회)	기본재산(억원)	6,114	7,370	4,658	210	2,204	3,127
	운용배수(배)	(37)	(34)	(51)	(1,074)	(104)	(74)
	손실보전금(억원)	2,325	2,652	8,002	12,065	12,381	2,534

⇒ (정책방향 ①) 지역신용보증제도 및 재보증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혁신과 구조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②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 금융안전망 고도화 필요

- 그간의 지역신보 금융안전망은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 등 긴급유동성 공급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치중
 - 부실징후가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 안내,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지원 등 필요
-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상환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 (참고)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

- [위기징후 소상공인] "선제적으로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 ('25.7, 현장간담회)
-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신설 및 신용평가 기준 완화 등 지원요건 검토 필요" ('25.6, 국민신문고)
- [채무 미변제자] "개인희생 및 파산 등을 통한 면책 이후에도 과거 이력으로 인한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어 자금조달에 애로사항 존재" ('26.2, 정책제안(누리집))

⇒ **(정책방향 ②)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취약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신보의 금융안전망 완비**

③ 지역에 특화된, 성장에 기반한 보증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지역신용보증제도는 그 어떤 제도보다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협업체계가 부재
 - * (참고) 지역신보법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정책은 중앙정부(중기부)가, 지역신보의 예산·인사는 지방정부가 관리감독 주체
- 또한, 일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참고)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

- [성장형 소상공인] "유망 성장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 확대 및 다각화 지원을 위해 보다 충분한 자금 지원 필요" ('25.9, 소상공인 간담회)
- [지역 소상공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 맞는 지역특화 지원 제도 운영 필요" ('25.12, A기업 현장방문)

⇒ **(정책방향 ③) 중앙-지방 협업체계 신설, 성장촉진형 보증제도 등 지역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 구축**

Ⅲ.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비전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핵심 성과목표

◆ 대위변제율: ('25말) 5.07% → ('26말) 4.1% → ('27말) 3.9% → (~'30말) 3.2%

◆ 부실채권 정리: ('26~'30) 총 13만개 업체, 2.2조원 부실채권 정리

◆ 비수도권 공급: ('25) 65.4% → ('26) 66% → ('27) 67% → (~'30) 70%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 지역신용보증제도 책임성 제고 위한 기반 마련
- 보증심사체계 고도화 및 보증사업평가 개편
- 구상권 행사 실효성 제고 및 도덕적해이 방지
- 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정화 조치

2

취약 소상공인 대상
 포용적 금융안전망
 확충



-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 과감한 정리
-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진입제한 규제 개선
-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체계 고도화
- 재해피해 및 취약소상공인 지원 강화

3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 및
 성장촉진 제도개선



-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상권기반 소상공인의 공동성장 지원 보증 강화
- 성장촉진 관련 규제 개선 및 기존 지원시스템 고도화

전략 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심사체계 고도화 등 보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재보증 안정화 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

1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증비율) 전액보증(보증비율 100%) 원칙적* 금지를 통해 지역신용 보증의 과도한 보증비율 축소(평균 現 94.3% → '27말 90%) ('26.9월~)
 - * 재해보증, 재도전보증, 저신용자보증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
 - ** (참고) 17개 지역신보 신규 공급액 중 전액보증이 48.3%를 차지('25 기준)
- (규제개선) 지역신보에서 특정 보증에 대한 별도 재원 확보시, 지역신보의 역량·권한으로 보증공급이 가능토록 개선
 - * (현행) 지역신보에서 재보증 없이는 자체 보증공급을 못하도록 제한 → (개선) 금융회사 출연금 등 별도 재원 확보시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토록 개선('26.12)
 - 다만, 별도 재원 확보로 손실보전 기반이 이미 마련된 만큼, 해당 보증에 대해선 재보증 제한('27~)

2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및 보증사업평가 개편 중기·금융

- (심사체계 개선) 재무·신용도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정보 다변화* 및 미래성장성 평가를 위해 심사에 SCB등급** 접목('27)
 - * 연체 등 금융정보 이외에 상권·정책이력·성실상환 정보 등 비금융정보 추가
 - ** Small-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미래성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시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금융위)

<기존 평가시스템>		<평가정보 다변화>		<미래성장성 평가 강화>
과거 연체이력 등 금융정보 기반 평가	+	정책수혜 이력,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 추가	+	금융위 협업, 소상공인 특화 SCB 접목(예: 한도 산출사)

- (보증사업평가* 개편) 보증공급량 등 단순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보증공급의 질적 평가 강화('26.4분기~)

* 중기부가 매년 17년 지역신보의 보증사업 평가 → 평가결과를 보증재원 배분시 적용

- 질적평가 강화를 위해 '보증수혜기업 생존율', '중저신용자 지원 노력도' 등의 평가항목 신설

3] 구상권 행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료 확보 근거 신설 중기·국세

- (과세정보) 지역신보가 구상권 행사시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6.하~, 지신보법 개정)

* (참고) 지역신보는 타 보증기관과 달리 구상권 행사 시 과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미비하여 채무자의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

< (참고) 다른 보증기관의 과세정보 관련 유사입법례 >

구 분	과세정보 구상권 관리 활용 관련근거	개정일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2항	'14.1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 제2항	'14.1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3 제2항	'22.1월

- (가상자산정보) 채무자 자산 파악을 위해 지역신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26.하~, 지신보법 개정)

4]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증해지 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

※ (참고) 중기부 자체감사 결과('25), 지역신보 보증해지 지연으로 신규 보증공급에 지장 발생, 과도한 상환기간 설정 등 문제점 확인

- (보증해지 체계) 상환완료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신속히 해지 하여 신규 보증공급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체계 개선 ('26.하)

	현 행	개 선
보증해지 통지기간	지역신보법에서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통보토록 규정 → '지체 없이'에 대한 하위규정이 미비	⇒ 금융회사-지역신보간 약관을 개정하여 '지체없이'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예: 7일내)
보증해지 점검체계	지역신보의 보증해지 처리에 대한 점검체계 미비	⇒ 신보중앙회에서 지역신보의 보증해지 처리 지연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고 지연시 패널티 부여

- (합리적 상환기간 설정) 대위변제 후 상환 시 상환기간의 최대 허용범위 설정·운영('26~, 지역신보 내부규정 개정)
- (내부통제 강화) 17개 지역신보의 내부통제·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상임감사 설치·운영 근거 마련('26.하~, 지신보법 개정)
 - * (참고) 지역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조합에 대해 상임감사를 두도록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5] 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정화 조치 및 관리 강화

- (재보증비율) 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공급 보증에 대해 현행 50% 이상 재보증비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26.8월~)
 - * (재보증비율) 17개 지역신보의 보증에 대해 신보중앙회가 다시 보증하는 비율
 -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재보증비율 (예: 50~60%)을 유지하여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 위축 방지
- (재보증한도) 연중 보증 공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재보증한도 설정·조정시, 보증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심의절차 신설('26.9월)
 - * (재보증한도) 신보중앙회가 지역신보별 보증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재보증 가능 규모
 - ** 긴급한 보증 수요 대응을 위해 연중 5% 이내에서 재보증한도 탄력적 운용('26.하~)
- (재보증요율) 세부보증별 보증재원, 리스크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보증요율을 설정·차등화하는 등 체계화('26.4분기)
 - * (재보증요율) 재보증 반대급부로 지역신보 → 신보중앙회에 납부하는 수수료율(0.8~1.0%)
- (재보증검사) 재보증 수반 지역신용보증 공급에 대한 검사, 시정 요구 및 이행 확인 등 점검체계 명문화('26.하~, 지신보법 개정)
 - * (참고)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한 검사, 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재보증제도 개편내용 비교표 >

	현 행		개 선
재보증비율	17개 지역신보에서 공급하는 신규 보증에 통상 50% 재보증 적용 (보증잔액 기준 평균 52.2%)	⇒	<u>향후 신규공급 보증에 대해 재보증비율 30% 적용</u> (단, 중저신용자 보증은 높은 수준(예: 50~60%) 유지)
재보증한도	17개 지역신보에서 보증계획 수립변경시 적정성 검토없이 재보증 한도 배정	⇒	<u>보증계획의 적절성, 한도확대 필요성 등 종합 검토</u> 후 재보증 한도 결정
재보증요율	보증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만 지역신보별 차등화 (0.8~1.0%)	⇒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u>세부보증별 보증자원, 재보증 리스크요인</u>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화
재보증검사	신보증양회가 재보증 수반 보증을 점검 할 수 있는 <u>법적근거 부재</u> (재보증계약에 근거해 제한적 운영)	⇒	신보증양회가 재보증 수반 보증 공급에 대해 <u>검사 및 시정요구 등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u>

6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에 대한 객관적 배분 기준 신설

- * (법정출연금) 지신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기업운전자금대출의 일정 요율(현재 0.05%)만큼 지역신보(지역신용보증제도) 및 신보증양회(재보증제도)에 출연하는 부담금
- 지역신용보증제도와 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출연금의 **객관적 배분기준** 마련 (중기부, '26.4분기, 고시 개정)
- * (참고) 현재는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배분기준을 결정·적용

전략 2. 취약 소상공인 대상 포용적 금융안전망 확충

◆ 회수불능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로 소상공인 재도약 발판 마련 및 위기·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 강화

1 부실채권 2.2조원 정리로 취약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 (목적) 지역신보가 보유한 구상채권*中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취약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

* (구상채권) 지역신보가 보증이용 차주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이후, 해당 차주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25년말, 잔액기준 약 4.6조원)

○ (방향)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기구 통한 매각뿐만 아니라, 매각 곤란 부실채권에 대한 지역신보의 자체 소각* 활성화

* (소각, 消却, Cancellation) 채권자 결정으로 채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없애는 것

○ (계획) 소각대상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해 지역신보 소각 확대(당초 0.8 → 1.1조원, 0.3조원↑) ⇒ 5년간 2.2조원* 부실채권 정리

* 지역신보 자체 소각('26~'30, 1.1조원), 새출발기금 매각('26, 약 0.7조원), 새도약기금 매각('26, 약 0.3조원), 기타('26~'30, 약 0.1조원) 등 약 2.2조원

- 소각대상 확대 등 : 소각대상 요건 완화를 통해 대상채권을 확대 하고, 소각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26.하~)

*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소각 전결규정 하향

구 분	현 행	개 선	기대효과
소각대상 요건	대위변제 후 3년 경과 & 추심불능채권	대위변제 후 2년 경과 & 추심불능채권	소각채권 확대 (약 20% 증가 추정)
소각승인 절차	지역신보 이사장 전결	지역신보 담당부서장 전결	신속한 소각 결정 가능

- 수시상각제 : 소각 前단계인 상각* 활성화를 위해 상각 시기 단축 및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수시상각제도 도입 ('26.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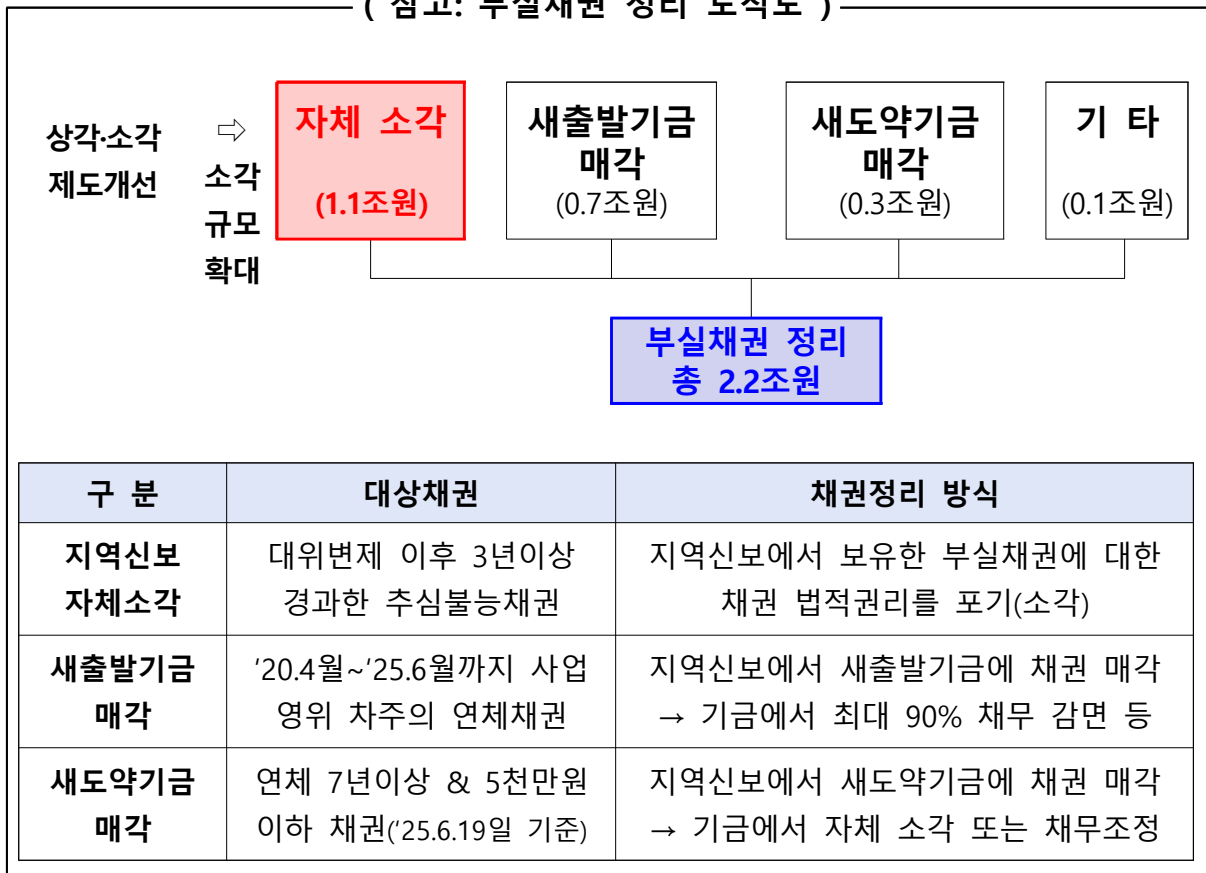
* (상각, 償却, Charge-off) 구상채권 中 연체채권 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 (소각 前단계로 법적권리는 유지)

구 분	현행 상각제도	수시상각제도	기대효과
상각대상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회수불능 구상권	+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채무자의 채권	신속한 상각 결정 가능
상각횟수	연 2회(상반기 각 1회)	제한 없음	상각채권 확대 (약 10% 증가 추정)
승인절차	지역신보 상각 신청 → 신보중앙회 운영위 의결	지역신보 이사회 의결	신속한 상각 결정 가능

- 인센티브 확대 : 17개 지역신보 보증평가* 시, 부실채권 정리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우수 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 (참고) 중기부에서 매년 17개 지역신보의 보증업무를 평가하는 제도 운영중으로, 평가결과 우수 지역신보에 자원 배분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중

(참고: 부실채권 정리 도식도)



2] 채무 미변제자 등에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 중기법무

- (채무 미변제자)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경우, 지역신보에서 채권을 포기한 소각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허용하고, 파산 면책자 등은 신속한 소각 후 지원(‘26.4분기)
 - *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파산면책 등의 정보를 일정기간 등재하는 제도(신용정보법)
 - ※ 현재는 지역신보에서 채권을 포기한 소각기업,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면책자 등 채무 미변제자에 대해 신규보증 전면 제한
- (연대보증) 보증이용 주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 면책 받은 경우 연대보증자 채무도 면제* 추진 (‘26.하, 지신보법 개정)
 - * 과거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제도 개선 이전(‘18.4월)의 연대보증채무자들의 경우는 주채무자 면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채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 ※ (참고) 신·기보 등 다른 보증기관의 경우, 신·기보법 개정을 통해 주채무자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등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감경·면제 중

< 공공정보등록 해제시 소각기업 등 지원방안 >

대 상	현 행	개 선
소각기업 (지역신보에서 채권을 포기한 채무 미변제자)	신규보증 제한 (단, 재도전특례보증 허용)	신규보증 허용
파산면책자 등 (아직 채권이 소각되지 않은 채무 미변제자)	신규보증 제한 (단, 재도전특례보증 허용)	소각절차 간소화 통해 신속한 소각지원 (소각후 신규보증 허용)
연대보증채무자 (과거 지역신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주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면책 받더라도 연대보증채무 유지	주채무자 개인회생·파산 면책시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3]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사전적인 경영애로 지원 강화 중기·금융

- (사전 위기 포착·지원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상담·경영진단 등을 거쳐 필요 지원 정책 연계 (‘26.상)
 - **1단계** : 보증 이용 차주 상시 모니터링으로 정상 상환 중 폐업, 부실 위험 차주 약 11만명 대상 위기징후 알림 안내(알림톡)
 - **2단계** : 대상자 선별후 심층상담 → 경영진단 → 맞춤형 컨설팅, 재기교육 및 보증 등 비금융·금융 연계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신보-금융회사 공동 컨설팅 신설) 지역신보와 금융회사 공동으로 위기징후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추진 ('26.하~)
- 지역신보·금융회사가 발굴한 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호 컨설팅 제공 후 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의 보증료 우대, 금리인하 등 지원

4 재해피해 및 신용취약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전망 강화 중기·행안

- (재해피해 지원 강화) 간접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신설('27) 및 직접 재해피해 지원요건 완화('26.3분기)
- * (참고)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직접"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해당, 재산상 손실은 없으나 매출감소 등의 경우 "간접"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해당

	현 행	개 선
간접 재해피해	별도 특례보증 없음	특별재난구역 內 간접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신설 (보증한도&보증료율 우대)
직접 재해피해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지원 제한 * 별도 특례보증 운영 중	재해피해 10일전 발생한 연체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취약소상공인 지원) 새마을금고-지역신보간 협업, 신용취약·인구 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 신설 ('26.하, 1,700억원)

5 취약소상공인 등의 제도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중기·행안

- ① 고령 및 디지털 활용 취약계층 등 취약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 ('26.상~)
 - * (예시) 전통시장 및 상권 방문 상담, 지방정부 연계 현장 상담 부스 운영 등
- ② 정책고객 데이터 기반 AI 활용 맞춤 보증 추천서비스 제공 ('27.하)
- ③ 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26.상)
 - * 법인기업 서류제출 간소화(신규 20종),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34 → 54종)

전략 3.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 및 성장촉진 위한 제도개선

◆ 지방정부와 협업에 기반한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지역·상권 기반 보증을 활성화하고, 성장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1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중기·지방·행안·문체

- (지역특화보증 신설) ‘지역특화보증 공모제’ 도입 (‘26.4분기)하여 ‘30년까지 2조원 규모 신규 공급 추진
 -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발굴한 우수 보증 기획을 공모하여 일반보증 대비 재보증 조건 등 우대 지원

* 예시) 지방정부의 자금출연, 이차보전 연계 등

< 지역특화보증 공모제 운영절차(안) >

구분	공모	지역신보별 특화보증 추천	심사	선정 및 지원
세부 내용	지역신보별로 지역 산업, 상권 특성 등 고려한 성장지원보증 프로그램 공모	⇒ 각 지역신보 소재 지방정부에서 자금출연, 이차보전 등 우대 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추천	⇒ 평가·심사 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평가 실시	⇒ 보증 프로그램 선정 및 선정 시 재보증비율 및 재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보증지원
수행	신보중앙회 ('26.하)	지방정부, 지역신보 ('27.상)	신보중앙회 ('27.상)	신보중앙회, 지역신보('27.하)

- (사회적경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확대(‘26.상 300억원 → ‘26.하, 675억원)
- (지역관광)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세관광사업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규모 강화* 및 우대 지원(‘27)

* 특례보증 공급 규모 확대(‘26. 2,900 → ‘27. 3,200억원) 및 보증료율 우대(0.5%)

- (중앙-지역 간 소통 채널 신설) 지역정부 등과 협업을 위한 「(가칭) 중기부-지방정부 보증정책협의회」 구성 추진 ('26.4분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 및 제도개선 등 보증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정례적으로 논의
-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2 상권기반 지역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지원 보증 활성화 중기·금융

- (상권기반 성장형 보증)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가칭)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 추진 ('27)
- 상권활성화구역* 대상으로 상권 기획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상권 활성화 위한 구성원 공동을 지원하는 보증 도입 검토
- * 전통시장법에 의한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에 의한 “활성화구역”
- ** 상권의 발전 가능성, 차별성, 경쟁력 확보방안 등
- (골목상권) 지역신보-기업은행 공동 운영 중인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을 2,000억원 규모로 공급('26)
- * 지원대상 :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영위 소상공인
-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운전자금), 최대 1.5%p 우대금리 적용

3 보증한도 등 소상공인 성장 촉진형 규제 혁신

- (보증한도* 규제 완화) 일정 성장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기존 최대 보증한도 8억원 미적용('26.하~, 지신보법 시행령 개정)
- * 1개 기업 당 8억원 범위 내에서 개별 보증상품별로 최대로 지원 가능한 한도
- ** (예시) 최근 2~3년 연속 매출 증가, 고용 증가, 수출 확대 기업 등
- (업종별 사정한도 합리화) 업종별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정한도* 기준 조정 ('26.하)
- * 세부보증별 보증한도 내에서 기업의 신용, 매출, 업종 등에 따라 산정된 실제 한도

< 업종별 한도규제 개선(안) >

업종 구분	우대내용
제조업	매출액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사정한도의 200% 이내 우대
비제조업	매출액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사정한도의 150% 이내 우대

4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체계 고도화** 중기·지재

- (기존 지원체계 개편) 현재 운영 중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성장지원 보증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심사요건 등 정비 (26.하)

< 기존 성장형 보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안) >

구분	현행	개편 방안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 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각각 4억원, 2억원 한도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사업 등 선정 기업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수혜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 모두의 창업로컬 트랙 상위 진출자 우대 지원 검토
미래 성과연동 특례 보증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중 미래성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기업 8억원 한도 지원 *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요건 동시 충족 시 신청 가능, 2차 지원은 당기 매출액이 1차 지원 시 이상	초기 성장기업 진입 활성화 위해 매출액 고용 등 기본 신청요건 및 1단계 지원 후 2단계 심사 시 적용매출액 요건 완화

- (IP보증 신설 등) 지식재산권 보유 소상공인 등 특례 보증 도입 (최대 1억원) 및 공공IP지원사업 참여기업 보증 우대* (27.상)

*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IP지원 관련 프로그램((예시) IP보증 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경우 보증료 감면 지원

- (녹색기업 성장지원) ESG 실천 소상공인 대상 “녹색기업지원 특례 보증” 규모 확대 (300 → 1,000억원) 및 기업당 지원한도 증액* (26.상)

* 녹색확인기업, ESG경영 실천 기업 중 고용유지·창출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지역사회공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

IV. 향후 추진일정(안)

◇ 입법과제는 '26년 4분기까지 법안마련 및 발의, 정책과제는 '26년 하반기부터 신속 추진하여 목표시점까지 완료

정책과제	부처	추진일정
1.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기	'26.하
▶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및 보증사업평가 개편	중기, 금융	'26.3Q~
▶ 구상권 행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료 확보 근거 신설	중기, 국세	'26.하~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증해지 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	중기	'26.하~
▶ 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정화 조치 및 관리 강화	중기	'26.3Q~
▶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객관적 배분 기준 신설	중기	'26.하
2. 취약 소상공인 대상 포용적 금융안전망 확충		
▶ 부실채권 2.2조원 정리로 취약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중기	'26~'30
▶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	중기, 법무	'26.4Q~
▶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사전적인 경영애로 지원 강화	중기	'26.상~
▶ 재해피해 및 신용취약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전망 강화	중기, 행안	'26.3Q~
▶ 취약소상공인 등의 제도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중기, 행안	'26.상~
3.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 및 성장촉진 제도개선		
▶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중기, 지방, 행안, 문체	'26.하~
▶ 상권 기반 지역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지원 보증 활성화	중기, 금융	'26.상~
▶ 보증한도 등 소상공인 성장 촉진형 규제 혁신	중기	'26.하~
▶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체계 고도화	중기, 지재	'26.상~